

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577호 2018. 09. 20.(목)

고 시

- 사천시 고시 제166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 고시—2
- 사천시 고시 제169호 신송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고시—3
- 사천시 고시 제170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사항 고시—5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사천시 / 편집 : 공보감사담당관 / ☎ 831-2215 / FAX 831-6012

사 천 시 공 보

제577호

고 시

사천시 고시 제2018-166호

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수리사항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18. 9. 20.

사 천 시 장

1. 점용·사용 승인번호(승인일자) : 제2018-3호 (2018. 7. 23.)
2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자의 성명·주소
 - 성 명 : 사천시장(우주항공과장)
 - 주 소 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3. 공사 내용
 - 사천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(기존현황도로 편입을 위한 도로공사)
4. 점용·사용(공사)의 장소
 -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신촌리 584번지선 공유수면
5. 공사완료 신고수리일자
 - 2018. 9. 11.

사 천 시 공 보

제577호

사천시 고시 제2018-169호

신송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·고시

「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38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『신송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』에 대하여 「농어촌정비법」 제58조(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)제3항 및 제59조(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)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합니다.

2018. 9. 20.

사 천 시 장

1. 사업명칭 : 신송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
2. 사업목적 : 본 사업은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및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라 농어촌의 종합적·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,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3. 사업비 : 500백만 원

사 천 시 공 보

제577호

4. 주요사업내용

[단위 : 백만원]

사업분야	세부사업	사업개요	사업비	비 고
합 계			500	
기초생활 기반확충	소 계		370	
	어울림 문화복지관	- 마을회관 리모델링 - 화장실 설치 1식	220	
	어울림 마당 및 쉼터조성	- 어울림마당 및 쉼터	150	
지역역량 강 화	소 계		100	
	어울림 문화센터	- 어울림 풍물교실 - 평생학습 동아리	40	
	어울림 교육	- 방과후 프로그램 - 청소년 동아리지원	30	
	커뮤니티 생활공동체	- 주민화합 문화축제 - 농산물꾸러미 장터	30	
부대비용	소 계		30	
	기본 및 실시설계 등		30	

5. 사업시행자 : 사천시장

6. 사업시행기간 : 2016년 ~ 2018년(3년간)

7.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

연 번	위 치		지 목	면 적 (㎡)		소 유 자		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		권리의 종류 및 내용	비고
	동리	지번		대	장	성명	주 소	성명	주 소		
1	송지리	310-2	창	252	252	조*주	사천시 용현면				

※ 관련 도서는 사천시청 4층 지역개발과(055-831-3242)에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577호

사천시 고시 제2018-170호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사항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18. 9. 20.

사 천 시 장

1. 점용·사용 승인번호 : 제2018 - 05호
2. 점용·사용 승인 연월일 : 2018년 9월 17일
3. 점용·사용의 목적
 - 선박 안전관리 및 접안에 필요한 PE 부잔교형 접안시설 설치
4. 점용·사용의 장소
 - 경남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4-2번지선 공유수면
5. 점용·사용의 면적 : 320.4㎡(직접 : 60.2, 간접 : 260.2)
6. 점용·사용의 기간 : 2018년 9월 17일 ~ 2033년 9월 16일(15년간)
7. 점용·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·주소
 - 가. 성 명 : 사천시장(해양수산과장)
 - 나. 주 소 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